



종교 단체 및 지역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최종 규정 수혜자/의뢰인 권리에 대한 서면 통지서

본 기관의 프로그램 전체 또는 일부는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생필품 보조 프로그램 (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 CSFP), 긴급 식량지원 프로그램(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TEFAP), 지역 식량 구입 지원(Local Food Purchase Assistance, LFPA)에 대한 수혜자/의뢰인 권리 및 CSFP, TEFAP 추천 요건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제공하고 아래 내용을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본 기관은 종교 및 종교적 신념, 종교적 신념 거부, 종교 행사 참석 또는 참여 거절을 이유로 귀하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 본 기관은 관련 단체가 주최하는 명백한 종교 활동(예배, 종교 교육 또는 개종 등 명시적인 종교적 내용에 관한 활동 등)에 참석 또는 참여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활동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귀하의 선택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 본 기관은 사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명백한 종교 활동(예배, 종교 교육 또는 개종 등 명시적인 종교적 내용에 관한 활동 등)과 직접적인 연방 재정 지원 활동의 시간 및 장소를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 단체가 서비스 또는 혜택 제공을 거부하는 등 상기 보호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서면 항의서(U.S. Department of Agriculture,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 Executive Director, Center for Civil Rights Enforcement, 14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50-9410) 또는 이메일(program.intake@usda.gov)을 통해 위반 사항을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거주지에 위와 같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연방 자금 지원 단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기아 핫라인으로 연락하십시오.

- **전화 이용:** 담당자와 통화를 원할 경우, 오전 7시~오후 10시(동부 표준시)에 1-866-3-HUNGRY (1-866-348-6479) 또는 1-877-8-HAMBRE (1-877-842-6273)로 전화하십시오.
- **문자 이용:** 1-914-342-7744로 '식량', '여름', '식사' 등 핵심 단어를 포함한 질문을 문자로 전송할 경우, 주소/우편 번호 주변 자원에 관한 자동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서면 통지서는 귀하가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를 받기 전에 귀하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특성 또는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통지서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외 상황 발생 시, 가능한 한 빨리 본 통지서를 귀하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종교 단체 및 지역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최종 규정(89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FR) 15671 및 7 미국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파트 16). USDA 프로그램 TEFAP, CSFP, LFPA에 적용됩니다.

본 기관은 공평한 기회를 제공합니다.